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전자증명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호라목 신설)

3.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의 발급기능 제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5.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 가. ~ 다. (생 략) <u><신 설></u></p>	<p>5.-----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보안토크 기능 없는 전자 증명서의 발급기능 제외</u> 「<u>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u>」 제8조제1항 단서의 <u>보 안토크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기능 을 부여하지 아니한다.</u></p>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